

제286회 정례회
성 북 구 의 회

의안
번호 제41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 병 곤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 413 호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제 출 일 : 2021. 11. 10.
- 회 부 일 : 2021. 11. 17.

2. 제안이유

2022. 1.13. 시행되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신설되는 주민이 ” 규칙 제정·개정·폐지의 의견 제출” 규정에 의거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문맥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인용조항 정비 (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20조¹⁾, 제32조²⁾, 제78조³⁾

나. 「지방자치법」 제20조의 신설에 따른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 의견제출 등” 절차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19조 ~ 제23조)

1)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2)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3)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다. 조례의 일부 내용 정비 및 신설 (안 제4조, 제7조, 제9조)

○ 안 제4조(입법예고 대상) : 입법예고 비대상

현재	정비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① - 중략 - 1.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 좌동 - 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안 제7조(예고기간)

현재	정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3조 ⁴⁾ 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 안 제9조(공청회) : 공청회 공고의 구체적 방법

현재	정비
② 1. ~ 5. (생략) <신설> 6. 그 밖에 <u>필요한</u> 사항	② 1. ~ 5. (현행과 같음)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u>공청회 개최에 필요한</u> 사항

※ 정비(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오타 (“공청에” ⇒ “공청회”)로 수정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하여 문구와 문맥 등 정비

(안 제2조 ~ 제6조, 안 제8조, 안 제10조 ~ 안 제11조, 안 제13조 ~ 안 제14조, 안 제16조 ~ 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0조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2021. 9. 30. ~ 2021. 10. 20.

라. 비용추계 : 미첨부사유서

- 5)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 제20조의 신설에 따른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 의견제출 등”에 대하여 조례로 신설·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하여 문구와 문맥 등을 이해하기 쉽고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사료됨.